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53
----------	------

제출연월일: 2017. 10.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2018년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보훈단체 및 보훈 대상자의 복지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명칭, 입주단체 등(안 제1조~제5조)
- 나. 운영협의회, 운영 및 위탁관리(안 제6조~제7조)
- 다. 지원(안 제9조)
- 라. 시설운영, 시설의 이용(안 제10조~제11조)
- 마. 수탁자의 의무, 양도금지, 공유재산 사용 등(안 제12조~제14조)
- 바. 위탁협약의 해지, 원상복구, 손해배상 및 지도감독(안 제15조~제18조)
- 사.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9조~제20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8. 31. ~ 2017. 9.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존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존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존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존단체

제6조(운영협의회) ① 구청장은 보존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존회관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존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보존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존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 ① 보존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만료 3개월 이전

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운영)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동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분기만료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재위탁 전까지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16조(원상복구) 수탁자가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 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비용 발생(조례안 제7조, 제15조, 제1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비용은 우리 구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금액(연평균 1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복지정책과 이지연 (2286-5020)

< 관 계 법 규 >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1. 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0. 19. / 성동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17. 10. 20.
- 다. 상정일자: 2017. 10. 30.
(제23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 가.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 나. 제안이유
2018년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보훈단체 및 보훈 대상자의 복지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명칭, 입주단체 등(안 제1조~제5조)
- 나. 운영협의회, 운영 및 위탁관리(안 제6조~제7조)
- 다. 지원(안 제9조)
- 라. 시설운영, 시설의 이용(안 제10조~제11조)
- 마. 수탁자의 의무, 양도금지, 공유재산 사용 등
(안 제12조~제14조)
- 바. 위탁협약의 해지, 원상복구, 손해배상 및 지도감독
(안 제15조~제18조)

사.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9조~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8. 31. ~ 2017. 9.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건립 예정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 제2조에서는

-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 제5조에서는

- 보훈회관의 기능과 입주단체를 규정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 18조에서는

- 보훈회관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보훈회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보훈단체 운영의 활성화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 애국정신 선양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임.
- 성동구 보훈회관은 옛 금호4가동 청사를 임시적으로 사용해 오다 금호제20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임.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를 위해 희생된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